의 안 번 호	2202	[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3. 12. 1.(금) 이명녀 의원 외 9명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3. 12. 1.(금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3. 12. 15.(금)

2. 제안설명 요지(이명녀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울산광역시 중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및 창작 인프라 확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지역 문화를 창출 함으로써 중구의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정의(안 제2조)

○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(안 제5조)

○ 청년 문화예술 사업 등(안 제23조)

○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(안 제24조)

○ 실태조사(안 제25조)

다. 근거법규

○「청년기본법」 제4조 , 제23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옥범)

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지원 강화 및 창작 인프라 확충을 도모하고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3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 거 법 규

청년기본법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 ·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· 실시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,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.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 · 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3조(청년 문화활동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